

# 고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1214
------------	------

제출연월일 : 2010. 3. 23.  
제 출 자 : 고성군수

## 1. 개정이유

- 건축법 개정(법률 제8974호 : 2008.03.21) 및 같은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시행(2008.10.29) 되고, 주택법 개정(2009.05.04)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법개정 이유에 맞추어 보완하고 대체 조항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 함.

## 2. 주요내용

- 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해 개정된 「건축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조항을 순차적으로 정비.
- 나. 법에 대한 약칭을 제1조(목적)에서 생략하고 제2조(적용범위)에 포함하여 개정 함.(안 제2조)
- 다. 신축위원회의 심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3조3)
- 라. 적용의 완화신청서 신설과 완화여부의 통지 일을 수정하고, 완화대상 건축물 및 건축 기준을 신설 함.(안 제4조)
- 마.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범위를 구체화 하여 정함.(안 제6조의3)
- 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에서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제외하기 위하여 단서조항을 신설 함.(안 제7조)
- 사. 기존 재래시장 내에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등을 가설건축물로 정함.(안 제8조)
- 아. 건축조례로 정하는 창고·차고·작업장 등의 기계보호를 위한시설 및 공장부지내 소규모 천막구조의 건축물과 첨단산업공장의 생산제품 및 자재보관을 위한 창고용 경량 철골조의 건축물을 가설건축물로 정함.(안 제8조)
- 자.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감리자가 작성한 완료보고서로 사용승인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대수선에 한하도록 개정 함(안 제9조)
- 차.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가설건축물을 신설 함(안 제9조의2)
- 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범위, 대행자의 지정, 검사조서의 기록방법, 수수료의 청구·지급내용 및 신청서식 등을 개정 함.(안 제10조)
- 타. 건축물의 유지·관리 건축물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1조)

- 파. 대지안의 조경 등을 조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신설 함.(안 제12조)
- 하. 식재 등 조경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식재토록 개정 함.(안 제13조)
- 가. 연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너비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신설 함.(안 제13조의2)
- 너. 사실상 통행로에 대한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절차를 개선 함.(안 제14조)
- 더.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지하층을 제외토록 단서사항을 신설 함.(안 제26조)
- 러. 맞벽 건축할 수 있는 도로너비를 20미터로 확대하고, 건축물의 용도, 층수 등을 정함.(안 제27조)
- 머.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에서 10미터 이내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전면도로의 경계선에서 적용한 것을 중심선으로 적용하도록 개정 함.(안 제28조)
- 버.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완화대상 건축물을 정하고, 공동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띄어야 하는 거리 규정을 신설 함.(안 제29조)
- 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공개공지 기준의 위반사항 추가 등 일부내용을 수정 및 신설 함.(안 제39조)
- 어. 옹벽 및 공작물의 높이가 6미터 이상일 경우 공작물로 준용토록 구체화 함(안 제40조)
- 저. 조례개정에 따라 각종 별표에 대하여 정비 및 신설 함.(안 별표 1에서 별표 5까지) 처 각종 신청서 서식을 정비 및 신설 함.(안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4호 서식까지)

### 3. 참고사항

#### 가.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10-16호(2010.1.7~1.26)
- 제출의견 : 없음.

#### 나. 관련법령 및 근거

- 건축법

#### 다. 예산조치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 4. 본 문 : 덧붙임

# 고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성군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에 따라 고성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본문 중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조 및 영 제5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위원회”를 “건축위원회”로 “1인”을 “1명”으로 “10인 이상 20인”을 “10명 이상 20명”으로 하고, 같은 법 조제2항 중 “풍부한 자료”를 “풍부한 사람 중에서”로 하며, 같은 조제4항 중 “원활하게”를 “원활하게”로 “1인”을 “1명”으로 “담당과장이 지정하는 자”를 “각각 업무담당 및 담당자”로 하며, 같은 조제5항 중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의3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또는 영에 따른 이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제3조의5제2항 중 “개회하고”를 “회의를 시작하고”로 한다.

제3조의6제2항 중 “5인 이상 10인”을 “5명 이상 10명”으로 한다.

제3조의8 본문 중 “범위 안”을 “범위”로 “수당과 여비”를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로 “아니한다”를 “아니하다”로 한다.

제3조의9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영·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 6.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완화신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건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영 제3조의 4 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나.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 등을 보관하기 위한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시설

제5조 제목 중 “기존건축물등에 대한 특례”를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 규정에 의한”을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으로 “각호의 1에”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법 제8조의2제1항 및 영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로 한다. 같은 조제3호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법 제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3(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영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용에 한한다)
3.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버섯재배사·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허가(또는 신고)·허가(또는 신고)사항변경 등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적합한 것으로서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영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균린생활시설 및 영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균린생활시설로서 그 층수가 지상1층이고, 높이가 4미터이하인 것으로 연면적 100제곱미터미만인 것.
  2. 영 제15제5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제10호는 제외) 및 기존 재래시장 내에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 등 전천후 시설
- ③ 영 제15조제5항제1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기둥은 강파이프조, 벽체와 지붕은 천막 구조 등의 창고·차고·작업장 및 기계보호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1층에 한함)
4. 공장부지내에서 기둥은 강파이프조 벽체와 지붕은 천막 구조의 소규모폐기물 처리·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5. 첨단산업공장의 생산제품 및 자재보관을 위하여 건축하는 창고용 경량철골조의 건축물

제9조의2를 제9조로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법 제18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로 “3층 이하로서 연면적 495제곱미터(주택의 경우 66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에 한한다”를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 업무신고를 필한 건축사가 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한 건축물로 한한다”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영 제15제5항 및 제8조제3항 각호의 건축물에 한한다.

제10조를 삭제하고, 제9조를 제10조로 하며,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 및 영 제20조제1항에서 “허가대상 건축물 중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모든 허가대상 건축물을 말한다. 단,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 전 현장조사·검사 및 현장확인
2.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5. 그 밖에 군수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 :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2. 제2항제4호, 제5호의 업무 : 고성군 지역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대행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인 검사조서에 표기된 내용의 조사 및 검사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검사내용을 검사조서의 기타사항 또는 종합의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여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반출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선기, 도로접용 등 관세 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필증 교부여부 등(해당하는 경우에 한 한다)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등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여부

⑤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군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기술사의 노임단가를 준용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1.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은 제외한다)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 10퍼센트
2.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 90퍼센트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와 대한건축사협회 경상남도 고성지역 건축사회장(이하 “건축사회장”이라 한다)이 협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회장은 업무대행자의 위임을 받아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건축물의 유지·관리) 법 제35조 및 영 제23조에 따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단, 기숙사는 제외한다)
2.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관리주체가 없는 건축물
3. 그 밖에 군수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2(건축지도원) ① 법 제37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1. 시설직(건축직류) 공무원
2.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와 그 외 수당, 여비 및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제목을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를 “대지안의 조경 및 공지”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32조 및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로 하고 같은 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

### 치하는 관광시설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 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식재 등 조경기준)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너비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축사
2. 작물재배사
3. 벼섯재배사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유지인 경우에는 포장되어 사용 중인 경우에 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에 따라 주민공동사업 등으로 포장되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
2. 주민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제방·구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공유지
3. 사인이 포장한 도로라도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편입 토지소유자들이 서면동의하고 포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사용 중인 통로
- ② 제1항에 따른 통행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별지 제4호 서

식에 현황사진·현황측량성과도 등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의2 제목 중 “적용례”를 “조치”로 “법 제46조제4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1필지”를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한 필지”로 “2이상”을 “둘 이상”으로 한다.

제26조2를 제26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하며, 별지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한다.

제26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기준은 별표 3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다만, 지하층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상 대지의 분할제한 및 맞벽건축

제26조를 제26조의2로 하고, 본문 중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로 “다음 각호의 1”를 “다음 각 호에”로 하며, 같은 조제5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에”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① 법 제59조 및 영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주거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을 말한다.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수, 층수, 기타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층수 : 3층 이상일 것.

제7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장 건축물의 높이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제2호 중 “경계선으로부터”를 “중심선으로부터”

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지가 둘 이상의 전면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제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지와 도로사이 또는 도로반대 측에 광장, 하천, 녹지, 공원, 유수지,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에 법 제60조제3항의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경계로부터 20미터 이내의 부분만 포함하여 적용한다.

제29조제1항 중 “규정에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단서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시역 안에서”를 “단서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서”로 “경우”를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같은 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1층 이하로서 높이가 4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북방향으로 도로·공원·광장·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2. 정북···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⑤ 법 제61조제2항 및 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다.

⑥ 영 제86조제2항2호가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띄어야 한다. 다만, 다세대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 주택을 포함한다.)은 0.5배 이상으로 한다.

⑦ 영 제86조제2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이상으로 거리를 띄어야 하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으로 거리를 띄어 건축할 수 있다.

제7장을 제8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영 제113조제1항제2호에 의한”을 “영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영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을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항제1호 중 “파로티구조”를 “필로티”로 하며, 같은 항제2호 중 “공개공지등에는”를 삭제하고, 같은 항제3호 중 “공개공지등을 파로티”를 “필로티”로 하며, 같은 항제4호 중 “공개공지”를 삭제하고 같은 조제4항 중 “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폐율 등”을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용적률 등”으로 “법위내에서”를 “정하는 바에 따라 영 같은 조 같은 항의 법위에서”로 하며, 같은 항제1호 중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을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로 “면적 비율을 당해 지역의 용적율에 가산한 비율로 하되”를 “면적비율을 하되”로 “용적율”을 “용적률”로 하고 같은 항제2호 중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폭에 의한”을 “법 제6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 중 “영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27조의2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2조의3(옥상조경의 지원) ① 군수는 옥상·발코니·측벽 등 건축물 녹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권장설계 도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다.  
② 기존건축물에 대하여 옥상조경 및 입면녹화를 희망하는 경우 군수는 건축물 녹화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장을 제9장으로 한다.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4항을 같은 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의 “[별표 3]”을 “[별표 5]”로 하며, [별표 5]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가. 적용기준 중 3.을 삭제한다.

-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사항에서 따른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4. 법 제43조에 따라 공개공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법 제59조에 따라 맞벽건축 기준에 위반한 경우
- ③ 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중 제1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④ 법 제80조제4항 단서에 따라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총 5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⑤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40조제1항 중 “영 제118조제1항 제9호의 규정에서”를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로 “다음 각호의 1”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제1호 중 “높이 6미터 이상의”를 신설하며, 같은 항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제1호 중 “냉각탑 기타”를 “저수조, 냉각탑,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2. 저장시설 : 높이 6미터 이상의 시멘트 사일로, 진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화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것.
-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부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 ③ (가설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규정에 따른다.

## □ 신·구 조문 대비표

④ 위원회의 서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담당과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임명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의3(기능) 위원회는 법·영·시행규칙 및 조례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며 심의사항 중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전문분야의 실의를 위하여 필요시 소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의토록 할 수 있다.

② <설설>

④ 원활하게 1명을 두며, 간사 각각 업무담당 및 담당자가

⑤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의3(기능) ① 위원회는 법·영·시행규칙 및 조례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며 심의사항 중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전문분야의 실의를 위하여 필요시 소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의토록 할 수 있다.

②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또는 영에 따른 이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제3조의5(회의) ① (생략)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 ④ (생략)

제3조의5(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의를 시작하고

③ · ④ (현행과 같음)

### 제3조의6(소위원회) ① (생략)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 ④ (생략)

제3조의8(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9(비밀준수 등) ① 위원회의 위원, 간사등 위원회 업무에 관련된 자는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

##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4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등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군수에게 요청하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완화 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3.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하는 규정

4. 완화를 받고자 하는 사유

5. 완화 적용시 공공 및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6. 기타 관련도서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

### 제3조의6(소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5명 이상 10명  
③ · ④ (현행과 같음)

### 제3조의8(수당)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아니 한다.

### 제3조의9(비밀준수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4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영·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 6.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완화신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

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이한 이유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연기통보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관계법령, 제도등과 대지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관계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서 공공의 이익 및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에 저해되지 않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조(기존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사유로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영 제6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법 제8조의2제1항 및 영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 2. (생략)
3. 건축복합민원 심의의견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4. <신설>

**제6조의2(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등)**

① 법 제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하는 건축물을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고, 그 결과를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건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영 제3조의 4 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 나.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이 자기 가 생산한 농수산물 등을 보관하기 위한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시설

**제5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1. · 2. (현행과 같음)
3. ————— 별지 제2호 서식 —————.
4. 그 밖에 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6조의2(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말한다.

② (생략)

1. ~ 3. (생략)

**제6조의3(건축신고)** 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주택·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창고는 건축신고로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 3. <신설>

**제7조(건축허가 수수료)** ①법 제8조·법 제9조·법 제10조·법 제14조·법 제15조 및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또는 신고) 및 변경허가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할 때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고성군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독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로서 그 층수가 1층이고 높이가 4미터이하인 곳으로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영 제15조제5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

②(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의3(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영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용에 한한다)
3.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중 축사·버섯새배사·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제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허가(또는 신고)·허가(또는 신고)사항변경 등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가설건축물)** ①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적합한 것으로서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영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영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그 층수가 지상1층이고, 높이가 4미터이하인 것으로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영 제15조제5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물, 다만, 제10호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군수가 교통 및 통행에 지장이 있거나 미관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2. (생략)

3. ~ 5. <신설>

(제10호는 제외) 및 기존 재래시장 내에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 등 전천후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③ 영 제15조제5항제1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기둥은 강파이프조 벽체와 지붕은 천막 구조 등의 창고·차고·작업장 및 기계 보호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1층에 한함)

4. 공장부지내에서 기둥은 강파이프조 벽체와 지붕은 천막 구조의 소규모폐기물 처리·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5. 철단산업공장의 생산제품 및 자재보관을 위하여 건축하는 창고용 경량철골조의 건축물

제9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제18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로서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3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주택의 경우 66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한한다.

<신설>

제9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별 제14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건축사가 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한 건축물로 한다.

제9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및 제23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 제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는 3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495 제곱미터(주택의 경우 66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한한다.

②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허가 및 동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3. ~ 5. <신설>

③ 제2항제1호에 의한 업무대행자는 설계자를 대행자로 한다.

1. ~ 2. <신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에게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 수수료를 군수가 따로 정한다.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영 제15제5항 및 제8조제3항 각호의 건축물에 한한다.

## 제1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 및 영 제20조제1항에서 “허가대상 건축물 중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모든 허가대상 건축물을 말한다. 단,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 전 현장조사·검사 및 현장확인
2.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승인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5. 그 밖에 군수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 :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2. 제2항제4호, 제5호의 업무 : 고성과 지역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대행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인 검사조서에 표기된 내용의 조사 및 검사 외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며 검사내용을 검사조

서의 기타사항 또는 종합의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 5. <신 설>

1.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질거여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반출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 필증 교부여부 등(해당하는 경우에 한 한다)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등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여부

⑤ ~ ⑦ <신 설>

(5)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군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기술사의 노임단가를 준용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1. 건축허가(허가사항변경은 제외한다)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 10 퍼센트

2.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 90퍼센트

(6)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와 대한건축사협회 경상남도 고성지역 건축사회장(이하 "건축사회장"이라 한다)이 협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7) 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청

구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회장은 업무 대행자의 위임을 받아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

#### 제10조(업무대행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

-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대행을 한 자가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 매분기 말일까지 명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대행수수료를 청구하여야 하며, 보득이한 경우 당해연도에 한하여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업무대행수수료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건축물의 유지·관리) 법 제26조 및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법 제28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으로 하여금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점검표에 따라 유지·관리의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1. ~ 3. <신 설>

제11조(건축물의 유지·관리) 법 제35조 및 영 제23조에 따라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단, 기숙사는 제외한다)
-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관리주체가 없는 건축물
- 그 밖에 군수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11조의2(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할 수 있다.

- 건축직공무원
- ~ 4. (생략)

제11조의2(건축지도원) ① 법 제37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 시설직(건축직류) 공무원
-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토로

제12조(대지안의 조경) ① 별 제32조 및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2. (생 략)

3. 케이트볼장·테니스장·스케이트장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야외 운동경기장

4. ~ 7. (생 략)

③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와 그 외 수당, 여비 및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장 대지안의 조경 및 공지

제12조(대지안의 조경) ① 별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1. ~ 3.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3. ━━

밖에 ━━

4. ~ 7. (현행과 같음)

③ ━━

제1항에 따른

④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 할 수 있다.

-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친환경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클프장

**제13조(조경 등 식재기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내시안의 조성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높이 3미터 이상의 교목을 50퍼센트 이상 심어야 한다.

구 분	심는 밀도 (제곱미터당)	상록수율 (%)
교 목(줄기가 굵고 굵으며 높이 자라는 나무)	0.2본 이상	50 이상
관 목(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는 낮은나무)	0.4본 이상	

#### <신설>

**제14조(도로의 지정)**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조건을 구비한 도로를 말한다.

**제13조(식재 등 조경기준)**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성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 <표 삽재>

**제13조의2(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너비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축사
2. 작물재배사
3. 버섯재배사

**제14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

- 주민 5가구 이상이 5년이상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행로
- 사실상 통행로의 유효 최소폭이 2미터 이상인 것
- <신설>

② <신설>

제25조의2(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적용례) 법 제46조제4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1필지 또는 하나의 대지가 2 이상의 용도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의2(대지안의 공지) 법 제50조 및 영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대지안의 공지기준  
“표 생략” 1. · 2. (생략)

제5장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유지인 경우에는 포장되어 사용 중인 경우에 한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에 따라 주민공동사업 등으로 포장되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
- 주민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제방·구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공유지
- 사인이 포장한 도로라도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편입 토지소유자들이 서면동의하고 포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사용 중인 통로

② 제1항에 따른 통행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현황사진·현황측량성과도 등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의2(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한 필지 둘 이상의

제26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기준은 별표 3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띠어야 한다. 다만, 지하층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3] 대지안의 공지기준  
“표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제5장 대지의 분할제한 및 맞벽건축

제26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1. ~ 4. (생략)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7조(맞벽건축) 법 제50조의 2 및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너비 1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맞벽건축 하는 대지를 말한다.

제26조의 2(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 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1. ~ 4 (현행과 같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 :

제27조(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① 법 제59조 및 영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 조례가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주거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을 말한다.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수, 층수, 기타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층수 : 3층 이상일 것.

### <신설>

제28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 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1. (생략)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를 제외한 부분  
②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 광장, 하천, 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

제28조(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지가 둘 이상의 전면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제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1. (현행과 같음)
- ----- 중심선으로부터  
-----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지와 도로 사이 또는 도로반대 측에 광장, 하천, 녹지, 공원, 유수지,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

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계로부터 20미터 이내의 부문

제29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문을 정부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이상 떨어 건축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삭제 2006. 10. 1. 조 1863>

③ 영 제86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비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④ ~ ⑤ <신설>

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에 법 제60조제3항의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건축이 금지된 경계로부터 20미터 이내의 부문만 포함하여 적용한다.

제29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 ⑤에 따라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단서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1층 이하로서 높이가 4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부방향으로 도로·공원·광장·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2. 정부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⑤ 법 제61조제2항 및 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다.

⑥ 영 제86조제2항'2호가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띄어야 한다. 다만, 다세대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 주택을 포함한다.)은 0.5배 이상으로 한다.

⑦ 영 제86조제2항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 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4배) 이상으로 거리를 띄어야 하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으로 거리를 띄어 건축할 수 있다.

## 제7장 공개공지 등

제32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113조제1항제2호에 의한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이라 함은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안에서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건축하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1. ~ 4. (생략)

② 영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의 확보비율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여, 동조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등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제13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페로티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개공지등에는 조경, 벤치, 파고라, 미술장식품, 시계탑, 분수 등을 설치하고

## 제8장 공개공지 등

제32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1. ~ 4.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다만, 펠로티의

2. <삭 제>

- 일반다중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공개공지등을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폭 3미터이상 유효높이 3미터 이상
  4. 공개공지 1개소의 최소면적은 50㎟(최소폭은 5m이상)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4) 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폐율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면적 비율을 당해 지역의 용적율에 가산한 비율로 하되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2배 이하
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편에 의한 높이 제한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이하

**제32조의2(대형건축물의 벽화 등)** ① 군수는 영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경관 증진을 위한 벽화 또는 경관조명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1. ~ 3. (생략)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벽화 또는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건축주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집행 등 절차에 관하여는 「고성군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3. 휠로터
  4. <신설>
  - (4)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용적률 등 성하는 바에 따라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 면적비율을 하되 용적률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 :
- 제32조2(대형건축물의 벽화 등)** ① 영 제27조의2에 따라
1. ~ 3.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 ③ 제2항에 따른
- 제32조의3(옥상조경의 지원)** ① 군수는 옥상·발코니·측벽 등 건축물 녹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권장설계 도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다.
- ② 기존건축물에 대하여 옥상조경 및 입

면녹화를 희망하는 경우 군수는 건축물  
녹화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8장 보칙

제39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법 제69조의 2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위반사항은 다음 각호의 하나와 같다.

-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고 축조한 경우
-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착공한 경우

<신설>

- 법 제50조의2 규정에 의한 맞벽건축 기준에 위반한 경우

<신설>

③법 제69조의2제4항의 단서에 의한 이행 강제금 총 부과횟수는 5회로 한다.

④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의하여 이행 강제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생·략)

“표 생략”, 가. 적용기준

1. · 2. (생·략)

## 제9장 보칙

제39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사항에서 따른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법 제43조에 따라 공개공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법 제59조에 따라 맞벽건축 기준에 위반한 경우

③ 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중 제1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 법 제80조제4항 단서에 따라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총 5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⑤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이 행간제금의 최대금액은 농어업용인 경우 「건축법」 제110조 벌칙규정에서 정한 벌금이하로 그 이외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108조 벌칙규정에서 정한 벌금이하로 한다.

4. ~ 6. (생략)

제40조(옹벽 및 공작물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 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신설> 레마콘제조설비, 아스콘제조시설,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신설> 사이로,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로서 지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유희시설 : 「공중위생관리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별표1의 건축물이 아닌 것.

4. <삭제 2006. 10. 4. 조 1863>  
② 영 제118조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냉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설> 2톤을 초과하는 것.
2. 건축물에 설치하는 인양능력이 2톤을 초과하는 크레인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다만, 건축허가 신청 시 건축설계도서에 표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삭제>

4. ~ 6. (현행과 같음)

제40조(옹벽 및 공작물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 제9호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 : 높이 6미터 이상의 그 밖에
2. 저장시설 : 높이 6미터 이상의 시멘트 사이로,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것.

② 영 제118조제1항 제10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수조, 냉각탑, 그 밖에 적재하중이 그 밖에
2. 그 밖에

현 행	개 정 안																																				
<p>[별표 1]</p> <p><u>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의 범위(제7조 관련)</u></p> <table border="1"> <thead> <tr> <th>연 면 적 합 계</th><th>금 액</th></tr> </thead> <tbody> <tr> <td>200제곱미터 미만</td><td>단독주택 4천원 기 타 9천원</td></tr> <tr> <td>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td><td>단독주택 6천원 기 타 2만원</td></tr> <tr> <td>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td><td>5만원</td></tr> <tr> <td>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td><td>10만원</td></tr> <tr> <td>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td><td>20만원</td></tr> <tr> <td>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td><td>40만원</td></tr> <tr> <td>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td><td>80만원</td></tr> <tr> <td>30만제곱미터 이상</td><td>160만원</td></tr> </tbody> </table>	연 면 적 합 계	금 액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4천원 기 타 9천원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6천원 기 타 2만원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5만원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10만원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20만원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40만원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80만원	30만제곱미터 이상	160만원	<p>[별표 1]</p> <p><u>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제7조 관련)</u></p> <table border="1"> <thead> <tr> <th>연 면 적 합 계</th><th>금 액</th></tr> </thead> <tbody> <tr> <td>200제곱미터 미만</td><td>단독주택 4천원 기 . 타 9천원</td></tr> <tr> <td>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td><td>단독주택 6천원 기 타 2만원</td></tr> <tr> <td>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td><td>5만원</td></tr> <tr> <td>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td><td>10만원</td></tr> <tr> <td>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td><td>20만원</td></tr> <tr> <td>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td><td>40만원</td></tr> <tr> <td>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td><td>80만원</td></tr> <tr> <td>30만제곱미터 이상</td><td>160만원</td></tr> </tbody> </table>	연 면 적 합 계	금 액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4천원 기 . 타 9천원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6천원 기 타 2만원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5만원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10만원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20만원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40만원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80만원	30만제곱미터 이상	160만원
연 면 적 합 계	금 액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4천원 기 타 9천원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6천원 기 타 2만원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5만원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10만원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20만원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40만원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80만원																																				
30만제곱미터 이상	160만원																																				
연 면 적 합 계	금 액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4천원 기 . 타 9천원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6천원 기 타 2만원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5만원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10만원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20만원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40만원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80만원																																				
30만제곱미터 이상	160만원																																				
※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신 설>	[별표 2]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제10조 관련)																												
	<table border="1"> <thead> <tr> <th>규 모 (신청 연면적 합계)</th><th>점검대행 소요시간</th></tr> </thead> <tbody> <tr><td>330제곱미터 미만</td><td>3</td></tr> <tr><td>330제곱미터 이상 660제곱미터 미만</td><td>4</td></tr> <tr><td>66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td><td>5</td></tr> <tr><td>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td><td>7</td></tr> <tr><td>2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td><td>8</td></tr> <tr><td>3천제곱미터 이상 6천제곱미터 미만</td><td>9</td></tr> <tr><td>6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td><td>10</td></tr> <tr><td>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td><td>13</td></tr> <tr><td>2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td><td>16</td></tr> <tr><td>3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미만</td><td>21</td></tr> <tr><td>6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td><td>25</td></tr> <tr><td>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td><td>36</td></tr> <tr><td>30만제곱미터 이상</td><td>48</td></tr> </tbody> </table>	규 모 (신청 연면적 합계)	점검대행 소요시간	330제곱미터 미만	3	330제곱미터 이상 660제곱미터 미만	4	66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5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	7	2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	8	3천제곱미터 이상 6천제곱미터 미만	9	6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10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	13	2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16	3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미만	21	6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25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36	30만제곱미터 이상	48
규 모 (신청 연면적 합계)	점검대행 소요시간																												
330제곱미터 미만	3																												
330제곱미터 이상 660제곱미터 미만	4																												
66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5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	7																												
2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	8																												
3천제곱미터 이상 6천제곱미터 미만	9																												
6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10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	13																												
2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16																												
3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미만	21																												
6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25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36																												
30만제곱미터 이상	48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기술사 노임단가 적용(매년 1월1일 기준, 천원미만 절사)

○ 산정식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시간당) × 소요시간 × 현장조사 시 비율(직접인건비) = 대행수수료

현 행	개 정 안												
<u>[별표 2] 대지안의 공지기준(제26조의2 관련)</u>  <u>“표 (생 략)</u>	<u>[별표 3] 대지안의 공지기준(제26조 관련)</u>  <b>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b>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대상 건축물</th><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띄어야 하는 거리</th></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가.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td><td style="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 공업지역 : 2미터이상</li> <li>• 준 공업지역외의 지역 : 3미터이상</li> </ul> </td></tr> <tr> <td style="padding: 5px;">나.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td><td style="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 공업지역 : 1.5미터이상</li> <li>• 준 공업지역외의 지역 : 3미터이상</li> </ul> </td></tr> <tr> <td style="padding: 5px;">다.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및 종교시설</td><td style="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미터 이상</li> </ul> </td></tr> <tr> <td style="padding: 5px;">라. 공동주택</td><td style="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파트 4미터 이상</li> <li>• 연립주택 3미터 이상</li> <li>• 다세대주택 2미터 이상</li> </ul> </td></tr> <tr> <td style="padding: 5px;">마. 근린생활시설(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한한다.), 의료시설(종합병원·정신병원·요양소·격리병원·장례식장을 말하며,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장례식장의 경우에는 지상에 건축물에 한한다), 노유자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마목 내지 카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td><td style="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미터 이상</li> </ul> </td></tr> </tbody> </table>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 공업지역 : 2미터이상</li> <li>• 준 공업지역외의 지역 : 3미터이상</li> </ul>	나.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 공업지역 : 1.5미터이상</li> <li>• 준 공업지역외의 지역 : 3미터이상</li> </ul>	다.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및 종교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미터 이상</li> </ul>	라. 공동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파트 4미터 이상</li> <li>• 연립주택 3미터 이상</li> <li>• 다세대주택 2미터 이상</li> </ul>	마. 근린생활시설(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한한다.), 의료시설(종합병원·정신병원·요양소·격리병원·장례식장을 말하며,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장례식장의 경우에는 지상에 건축물에 한한다), 노유자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마목 내지 카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미터 이상</li> </ul>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 공업지역 : 2미터이상</li> <li>• 준 공업지역외의 지역 : 3미터이상</li> </ul>												
나.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 공업지역 : 1.5미터이상</li> <li>• 준 공업지역외의 지역 : 3미터이상</li> </ul>												
다.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및 종교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미터 이상</li> </ul>												
라. 공동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파트 4미터 이상</li> <li>• 연립주택 3미터 이상</li> <li>• 다세대주택 2미터 이상</li> </ul>												
마. 근린생활시설(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한한다.), 의료시설(종합병원·정신병원·요양소·격리병원·장례식장을 말하며,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장례식장의 경우에는 지상에 건축물에 한한다), 노유자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마목 내지 카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동차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미터 이상</li> </ul>												

현 행	개 정 안														
<b>[별표 2] 대지안의 공지기준(제26조의2 관련)</b>  <u>“표 (생 략)</u>	<p style="text-align: center;"><b>[별표 3] 대지안의 공지기준(제26조 관련)</b></p> <p><b>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대상 건축물</th><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띄어야 하는 거리</th></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가. 전용주거지역(공동주택은 제외한다)</td><td style="padding: 5px;">· 2미터 이상</td></tr> <tr> <td style="padding: 5px;">나. <u>당해용도로</u>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td><td style="padding: 5px;">· 준 공업지역 : 2미터 이상 · 준 공업지역외의 지역 : 4미터 이상</td></tr> <tr> <td style="padding: 5px;">다. <u>당해용도로</u>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 제외), 문화 및 종교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td><td style="padding: 5px;">· 3미터 이상</td></tr> <tr> <td style="padding: 5px;">라.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td><td style="padding: 5px;">· 아파트 4미터 이상 · 연립주택 3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2미터 이상</td></tr> <tr> <td style="padding: 5px;">마. 근린생활시설(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한한다), 의료시설(종합병원·정신병원·요양소·격리병원·장례식장을 말하며,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장례식장의 경우에는 지상에 건축물에 한한다), 노유자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가목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td><td style="padding: 5px;">· 2미터 이상</td></tr> <tr> <td style="padding: 5px;">바.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한한다)</td><td style="padding: 5px;">· 3미터 이상</td></tr> </tbody> </table>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2미터 이상	나. <u>당해용도로</u>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준 공업지역 : 2미터 이상 · 준 공업지역외의 지역 : 4미터 이상	다. <u>당해용도로</u>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 제외), 문화 및 종교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3미터 이상	라.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아파트 4미터 이상 · 연립주택 3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2미터 이상	마. 근린생활시설(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한한다), 의료시설(종합병원·정신병원·요양소·격리병원·장례식장을 말하며,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장례식장의 경우에는 지상에 건축물에 한한다), 노유자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가목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 2미터 이상	바.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한한다)	· 3미터 이상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2미터 이상														
나. <u>당해용도로</u>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준 공업지역 : 2미터 이상 · 준 공업지역외의 지역 : 4미터 이상														
다. <u>당해용도로</u>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 제외), 문화 및 종교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3미터 이상														
라. 공동주택(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아파트 4미터 이상 · 연립주택 3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2미터 이상														
마. 근린생활시설(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한한다), 의료시설(종합병원·정신병원·요양소·격리병원·장례식장을 말하며,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장례식장의 경우에는 지상에 건축물에 한한다), 노유자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가목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 2미터 이상														
바.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한한다)	· 3미터 이상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신 설>	[별표 4]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제39조제3항 관련)	
	위반건축물	해당법조문 (건축법)
1.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 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19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20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3. 착공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을 한 건축물	법 제21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4. 대지안의 조경공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경공사를 훼손 한 건축물	법 제42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5. 공개공지에 관한 규정에 적 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43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현 행	개 정 안																												
<p>[별표 3]</p> <p>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제39조제4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대상 건축물</th><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산정기준</th></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단독주택, 공동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td><td style="padding: 5px;">「건축법」 제69조의2조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td></tr> <tr> <td style="padding: 5px;">공장, 창고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td><td style="padding: 5px;">「건축법」 제69조의2조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td></tr> <tr> <td style="padding: 5px;">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td><td style="padding: 5px;">「건축법」 제69조의2조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td></tr> <tr> <td style="padding: 5px;">제1종 균린생활시설, 제2종 균린생활시설, 관광휴게시설, 묘지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판매시설</td><td style="padding: 5px;">「건축법」 제69조의2조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td></tr> <tr> <td style="padding: 5px;">의료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td><td style="padding: 5px;">「건축법」 제69조의2조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td></tr> <tr> <td style="padding: 5px;">위락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td><td style="padding: 5px;">「건축법」 제69조의2조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이행 강제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td></tr> </tbody> </table> <p>가. 적용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축선 위반으로 인하여 공중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는 법령에서 정한 최대한도를 적용한다.</li> <li>2. 인접대지 경계를 침범한 경우는 법령에서 정한 최대한도를 적용한다. 다만, 토지소유권을 취득하고 허가(신고) 등의 절차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li> <li>3. <u>이행강제금의 최대금액은 농어업용인 경우 「건축법」 제79조 별칙에서 정한 벌금 이하로 그 이외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78조 별칙규정에서 정한 벌금이하로 한다.</u></li> <li>4. 부속건축물의 경우 주된 용도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li> <li>5. 산정된 금액의 천원이하는 절사한다.</li> <li>6. 「건축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때 이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li> </ol>	대상 건축물	산정기준	단독주택, 공동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건축법」 제69조의2조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공장, 창고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건축법」 제69조의2조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건축법」 제69조의2조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제1종 균린생활시설, 제2종 균린생활시설, 관광휴게시설, 묘지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판매시설	「건축법」 제69조의2조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의료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건축법」 제69조의2조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위락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건축법」 제69조의2조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이행 강제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p>[별표 5]</p> <p>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제39조제5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대상 건축물</th><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산정기준</th></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단독주택, 공동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td><td style="padding: 5px;">「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td></tr> <tr> <td style="padding: 5px;">공장, 창고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td><td style="padding: 5px;">「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td></tr> <tr> <td style="padding: 5px;">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td><td style="padding: 5px;">「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td></tr> <tr> <td style="padding: 5px;">제1종 균린생활시설, 제2종 균린생활시설, 관광휴게시설, 묘지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판매시설</td><td style="padding: 5px;">「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td></tr> <tr> <td style="padding: 5px;">의료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td><td style="padding: 5px;">「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td></tr> <tr> <td style="padding: 5px;">위락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td><td style="padding: 5px;">「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td></tr> </tbody> </table> <p>가. 적용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축선 위반으로 인하여 공중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는 법령에서 정한 최대한도를 적용한다.</li> <li>2. 인접대지 경계를 침범한 경우는 법령에서 정한 최대한도를 적용한다. 다만, 토지소유권을 취득하고 허가(신고) 등의 절차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li> <li>3. &lt;삭 제&gt;</li> <li>4. 부속건축물의 경우 주된 용도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li> <li>5. 산정된 금액의 천원이하는 절사한다.</li> <li>6. 「건축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때 이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li> </ol>	대상 건축물	산정기준	단독주택, 공동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공장, 창고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제1종 균린생활시설, 제2종 균린생활시설, 관광휴게시설, 묘지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판매시설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의료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위락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대상 건축물	산정기준																												
단독주택, 공동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건축법」 제69조의2조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공장, 창고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건축법」 제69조의2조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건축법」 제69조의2조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제1종 균린생활시설, 제2종 균린생활시설, 관광휴게시설, 묘지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판매시설	「건축법」 제69조의2조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의료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건축법」 제69조의2조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위락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건축법」 제69조의2조의 규정에 의거 산정한 이행 강제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대상 건축물	산정기준																												
단독주택, 공동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공장, 창고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제1종 균린생활시설, 제2종 균린생활시설, 관광휴게시설, 묘지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판매시설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의료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위락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현 행	개 정 안		
<b>[별지 제1호 서식] &lt;신 설&gt;</b>			
<b>[별지 제1호 서식]</b>			
<b>적용의 완화 신청서</b>			
<p>※ 해당 항목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p> <p><input type="checkbox"/> 건축주    <input type="checkbox"/> 설계자    <input type="checkbox"/> 시공자    <input type="checkbox"/> 공사감리자</p>			
<b>건 축 주</b>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b>설 계 자 (공사감리자)</b>	성 명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	
<b>시 공 자</b>	회사명		
	대표자	면허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규정 및 범위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사유			
적용의 완화시 공공의 이익이나 도시의 미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건축법」 제5조제1항 및 「고성군 건축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적용의 완화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b>고 성 군 수 귀하</b>			



현행

## 개정안

### [별지 제3호 서식] <신 설>

[별지 제3호 서식]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청구서

청구금액 : 일금

원정(元正)

### 송금계좌 :

(예금주: )

상기 현장조사·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고성군 건축조례」 제10조에 따라 청구합니다.

100

청구자 : (인)

고성군수귀하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4호 서식] <신 설>		[별지 제4호 서식]																												
도로지정 건축심의 신청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대지위치</td> <td colspan="5"></td> </tr> <tr> <td>건 축 주</td> <td colspan="2"></td> <td>주민등록번호</td> <td colspan="2">-</td> </tr> <tr> <td>도로길이</td> <td>m</td> <td>도로너비</td> <td>m</td> <td>도로면적</td> <td><math>m^2</math></td> </tr> </table>						대지위치						건 축 주			주민등록번호	-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m^2$							
대지위치																														
건 축 주			주민등록번호	-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m^2$																									
도로지정신청 현황																														
<p>※ 아래 부분을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지정함에 있어 토지 소유자의 이해관계는 신청인이 민·형사 책임을 진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30%;">관 련 지 번</th> <th>지 목</th> <th>면적(<math>m^2</math>)</th> <th>토지소유자</th> <th>비 고</th> </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r> </table>						관 련 지 번	지 목	면적( $m^2$ )	토지소유자	비 고																				
관 련 지 번	지 목	면적( $m^2$ )	토지소유자	비 고																										
년 월 일																														
신청인 : (인감날인)																														
고 성 군 수 귀하																														
<p>첨 부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황사진·현황측량성과도 1부</li> <li>2. 건축심의도서 15부</li> </ol>																														